

2020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 (학생 및 학과공지용)

2020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 및 실습기관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유형 및 신청방법

가. 신청유형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Type 1]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실습신청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은 [Type1]으로만 신청가능함.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2020. 01. 21.(화) ~ 02. 20.(목)까지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참가 신청(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2. 실습신청교과목 및 학점인정

*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 학과 전공으로만 인정 됨.(복수전공, 부전공인정불가)

실습신청 교과목 및 학점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			실습요건 •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함.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	16주 이상 (640시간이상)
	전공선택	12	전공현장실습(1)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2)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3)	전공선택	3	
			국내현장실습(6)	일반선택	3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	20주 이상 (800시간이상)
	전공선택	15	전공현장실습(1)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2)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3)	전공선택	3	
			전공현장실습(4)	전공선택	3	
			국내현장실습(6)	일반선택	3	

* 국내현장실습(4),(5)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하며 실습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를 진로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3. 실습기간

가.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실습시작일은 해당학기(2019-1학기) 개강일부터 가능

실습기간	시작일	종료일	비고
16주(640시간이상)	2020. 03. 02 이후	2020. 07. 20 이전	· 기간 내 16주 설정 가능
20주(800시간이상)	2020. 03. 02 이후	2020. 08. 17 이전	· 기간 내 20주 설정 가능
※ 졸업예정자는 16주 실습만 신청 가능 (*최대 늦은 실습기간: 2020.03.09.~ 2020. 06. 30) (* 실습기간 설정시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건표 참조바람)			

4.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참여 기업(기관) 자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라.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마.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부 운영규정개정고시 제2장 제7조에 의거)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월(4주) 140만원(2020최저임금기준)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기관)

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함.

6. 참여제의 기업(기관)

가. 텔레마케팅, 골프장 잔디 제거 업무, 경비, 건물관리, 주차관리, 목욕탕관리, 주유, 청소용역, 서빙 등의 직종을 신청하는 업체

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의 설계사 신청업체
다.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 인력공급업체(용업업체 포함)

라. 3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마. 현장실습 목적과 여건이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

7. 참가자 지원사항 (* 예산범위에 따라 변경가능성 있음)

가. 실습지원비

1) 실습학생: 실습학생지원비 월(4주) 40만원 지급

※ 실습학생지원비 지급을 위해 매월(4주)마지막날까지 (실습기관)출석부 및 (실습학생)주간실습일지 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총 실습기간 중 결석일수가 5일 이상일 시 학점인정 및 실습비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2) 실습기관: 실습기관운영지원비 실습학생 1인당 10만원 지급

나. 실습기간 중 학생 실습보험 가입

8. 학과(교수)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학생과의 매칭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대한 실습지도교수 승인

라.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와 '실습기관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단, 기존 2013 하계 현장실습이후에 현장실습에 참가했던 실습기관일 경우에는 실습운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됨)

9. 유의사항

가. 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졸업예정자)의 경우 2020. 06. 30.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현장실습(국내,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 오프라인수업을 이수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 이외의 오프라인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처리 됨.

(단,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학점+가상강좌 신청학점이 본인의 연간 수강가능 학점범위내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바람)

라. 현장실습은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마. 현장실습 도중 채용(채용형태불문)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바람.

바.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 불가.

사.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학과의 전공으로만 인정 됨.

(복수전공, 부전공 인정불가)

※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 개요

1. 대상학과

현장실습은 전학과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표의 기재된 학과의 3,4학년 참가를 권장함

가. LINC+사업 4차년도 현장실습 참여학과

단과대학	학과(부)
인문교양대학 (S-LAC)	* 한국어문학과, 중국어중국학과, 일본어일본학과, 러시아어러시아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체육학과, 스포츠레저학과, 골프산업학과
DU인재법학부	DU인재법학부(공법학전공, 사법학전공, 공공안전법학전공)
행정대학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도시행정학과, 도시·지역계획학과, 부동산학과
경상대학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금융보험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학과
사회과학대학	국제관계학과, 사회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 수리빅데이터학부(수학전공), 수리빅데이터학부(통계빅데이터전공), 화학·응용화학과, * 생명과학과, 생명환경학부(원예학전공), 생명환경학부(바이오산업학전공), 생명환경학부(식품환경안전학전공), 산림자원학과, 동물자원학과, 물리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환경공학과, 기계공학부(기계공학전공), 기계공학부(기계설계공학전공), 산업경영공학과, 식품공학과, 생명공학과, 화학공학과, 도시·조경학부(조경학과)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전자제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부(통신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임베디드시스템공학전공), 컴퓨터정보공학부(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전공)
조형예술대학	융합예술학부(현대미술전공), 융합예술학부(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융합예술학부(생활조형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재활과학대학	직업재활학과, 언어치료학과, 재활심리학과, 재활공학과, 재활건강증진학과
기초교육대학	창조융합학부
* 한국어문학과 : 국어국문학과, 국제한국어교육과 포함	
* 생명과학과 : 의생명과학과 포함	

나. 현장실습 제외기준

- 1) 학과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학과의 현장실습은 제외함
 - 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안경사 등
 - ②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자격관련 학과 등
 - ③ 기타 수익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 시험대상 학과 등
- 2) 학과 특성상 계절제 현장실습을 선수로 이수하고 실습내용을 활용한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하여 차학기에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실습을 이수하고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에 대한 실습은 제외함
- 3)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현장실습 진행 중 취업된 학생이 해당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 4)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 5)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 6) 기타 운영형태
 - ① 사회봉사, 현장체험/답사, 견학 등 현장실습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단기체험 활동 등은 제외
 - ② 실습기관 또는 실습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외
 - ③ 해당 전공과의 연관성이 없는 현장실습은 제외
 - ④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 간 현장실습에 관한 협약 또는 문서를 근거로 하지 않는 현장실습은 제외

2. 실습기관(기업) 요건

- 가. 학생의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을 우선으로 함
(단, 전공선택의 경우 반드시 학생의 원소속학과와 연관된 업무를 하는 기관만 가능)
- 나. 학생의 보건·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 다.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 및 지도가 가능한 기관
- 라.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 마.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부 운영규정개정고시 제2장 제7조에 의거)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월 140만원(2020최저임금기준)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기관)
- 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고시에 따라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수업의 형태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함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

3. 참여제의 기업(기관)

- 텔레마케팅, 골프장 잔디 제거 업무, 경비, 건물관리, 주차관리, 목욕탕관리, 주유, 청소용역, 서빙 등의 직종을 신청하는 업체
-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의 설계사 신청업체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 인력공급업체(용업업체 포함)
- 3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현장실습 목적과 여건이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

4. 실습기관 인정기준

구분	내용
실습기관 모집(섭외) 방법	○ 대학에서 직접 실습기관을 모집하는 경우 ○ 학과(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실습기관 인정범위 분류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등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함. 단, 대학교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연구실, 연구소, 센터,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참가신청 안내

1. 신청유형 및 신청기간

가. 신청유형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Typ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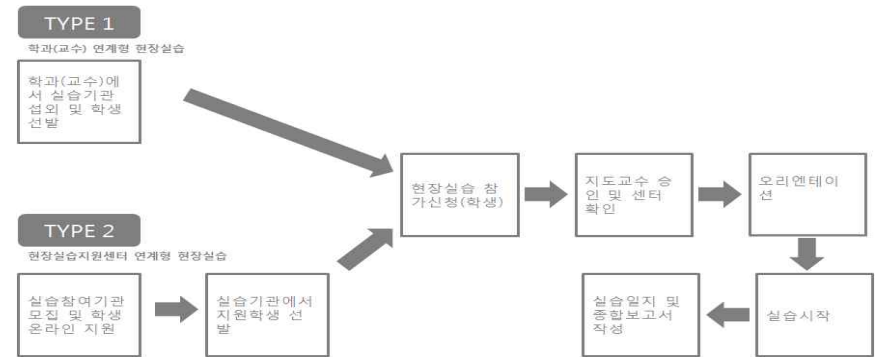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실습신청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신청할 학생은 [Type1]으로만 신청가능함을 유의바람.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19. 01. 21(화) ~ 02. 20(목)까지**

2. 실습유형별 참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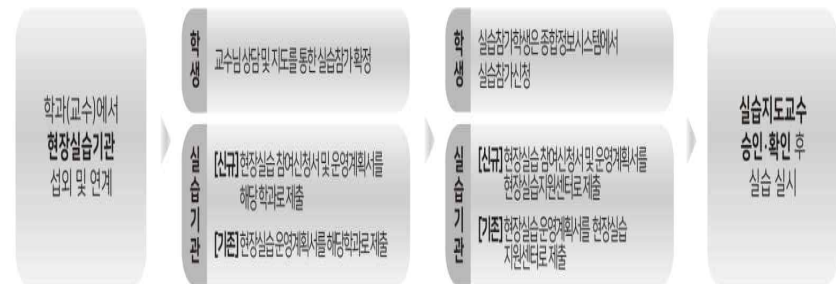
TYPE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학과 또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1) 학과(교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실습기관 섭외 및 연계
- 2) 학과 교수님 상담 및 지도를 통한 현장실습 참가 확정
- 3) **국내 현장실습(4),(5)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전공선택과 일반선택 혼합인정) 후 신청하여야 하며 실습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 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 를 진로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4) 실습기관, 실습기간 및 실습업무 등이 확정되면 해당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 및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 5) 실습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 2013학년도 하계 이후 현장실습 참여실적이 있는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참가할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참여신청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이 경우 실습생은 반드시 해당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교수님과 사전 협의 및 실습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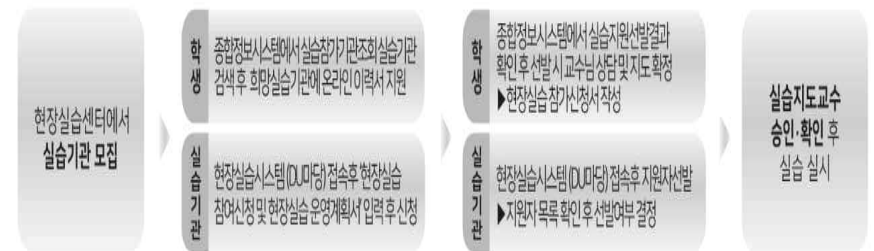
단,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개정 고시(2017.03.01.)에 따라 매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실습과정 신청 시 실습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바람.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 1)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가능기관 조회
- 2) 시스템에서 이력서 작성 후 희망하는 실습기관으로 온라인 실습지원
- 3) 실습 지원결과 선발여부 확인 후 선발되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현장실습 참가신청
- 4) 지원 후 선발이 되지 않았을 경우(선발여부에서 탈락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간 내 타 실습가능기관으로 지원 가능(지원한 실습가능기관의 선발여부 확정 전에는 타 실습가능기관에 지원할 수 없으니 신중히 지원하기 바랍니다)
- 5) 실습지도교수 승인 요청 → 실습지도교수 승인 → 현장실습지원센터 최종 확인 후 신청 완료



3. 현장실습지원시스템을 사용한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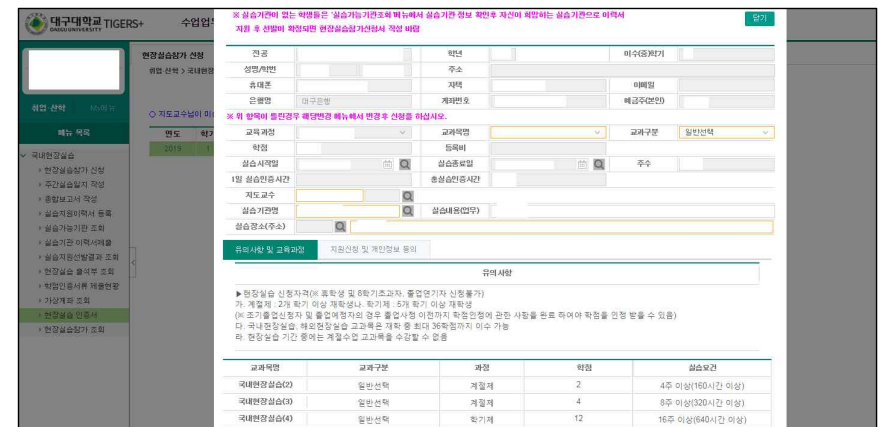
가. 실습유형별 현장실습 참가신청 방법

TYPE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 ① 학과 교수님과 상담한 후 실습기관을 추천받고 실습참가 확정
- ②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③ 현장실습 참가신청서 작성 후 신청



- 학생 개인정보사항은 학적시스템의 데이터이며 연락처, 계좌번호 등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메뉴(학적, 등록/장학 등)에서 수정하여야 함
- 실습시작일과 종료일은 16주 또는 20주의 기간을 충족하여야 저장이 되며 실습기간을 입력하면 교과목, 학점 등이 자동 입력됨
- 지도교수는 실습지도교수를 말하며, 현장실습을 지도하실 교수님을 '찾기' 메뉴를 통해 선택하고 해당교수님의 승인을 받아야 함(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한 교수님의 승인이 어려우면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재지정 하여야 함)
- 위 입력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 클릭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①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조회'버튼 클릭 후 실습가능기관 조회

<실습가능기관 계획서 '보기' 클릭 시 아래내용(실습정보) 확인>



② 실습가능기관 조회 후 실습지원을 위한 이력서 등록

※ 이력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실습기관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음



③ 이력서 등록 후 '실습지원' 메뉴에서 실습지원 클릭

- 실습기관 '찾기' 클릭 후 실습기관 선택



4) 실습지원 신청 후 선발결과 확인

- 실습지원 후 선발 대기 상태 : 이력서 '**접수**'로 표기됨
- 실습지원 후 해당 실습기관에서 선발을 확정하면 아래와 같이 이력서 '**선발**'을 확인 및 실습지도교수님과 상담 후 '**신청서**'를 클릭하여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야지만 정상 신청됨을 유의바람.

*** 유의사항**

- 실습지원 상태 '접수' 및 '선발'일 경우에는 타 실습기관으로 중복지원 불가
- 실습지원 상태 '탈락' 및 '신청취소'일 경우에는 타 실습기관으로 지원가능 (단, 신청취소는 실습지원상태가 "접수"일 경우만 가능하며 현장실습센터에 별도로 요청 하여야 함.)

5) 선발 확정 후 '현장실습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버튼 클릭

[실습유형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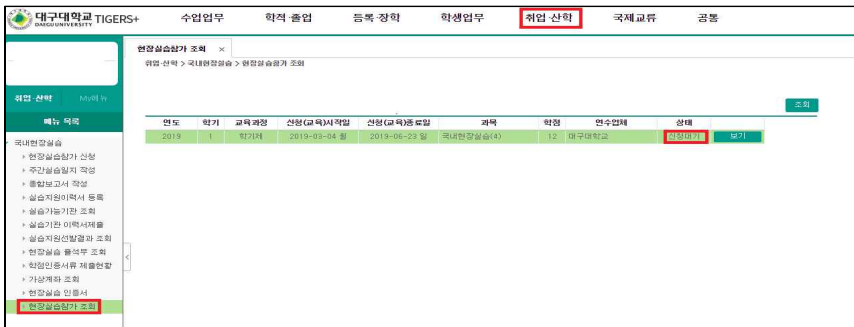
나.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지도교수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승인

① 현장실습 참가신청 후 '현장실습신청서관리' 메뉴에서 신청상태 확인 가능

- 학생이 신청서 작성 시 : 상태가 '접수'로 표시됨



- 실습지도교수님이 '승인'처리 시 : 상태가 '대기'로 표시됨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최종 실습 '확인' 처리 시 : 상태가 '통과'로 표시됨

※ 상태가 '통과'로 확인되면 신청에 관한 모든 과정이 종료됨



다. 실습일지(주간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작성

① 실습시작 후 '주간실습일지' 작성

-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시 평가자료로 활용됨
- 매월(4주)마지막날까지 입력완료하여야 실습지원비 지급 가능함.
- 특수문자 입력 금지 및 500byte이상 1000byte이하로 작성 후 저장 하여야 함.



② 실습 종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

-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시 평가자료로 활용됨
- 특수문자 입력 금지 및 500byte이상 1000byte이하로 작성 후 저장 하여야 함. (단, 실습기관 소개 및 건의사항 글자제한 없음)



3 실습지도교수

1. 현장실습 참가신청학생의 실습지도교수 승인

학생이 현장실습 참가신청 시 실습지도교수 승인을 신청하면 지도교수가 교원 시스템에서 승인/미승인 처리

※ TIGERS+(교원) → 학사행정 → 취업(or 역량) → 국내현장실습 → 실습지도교수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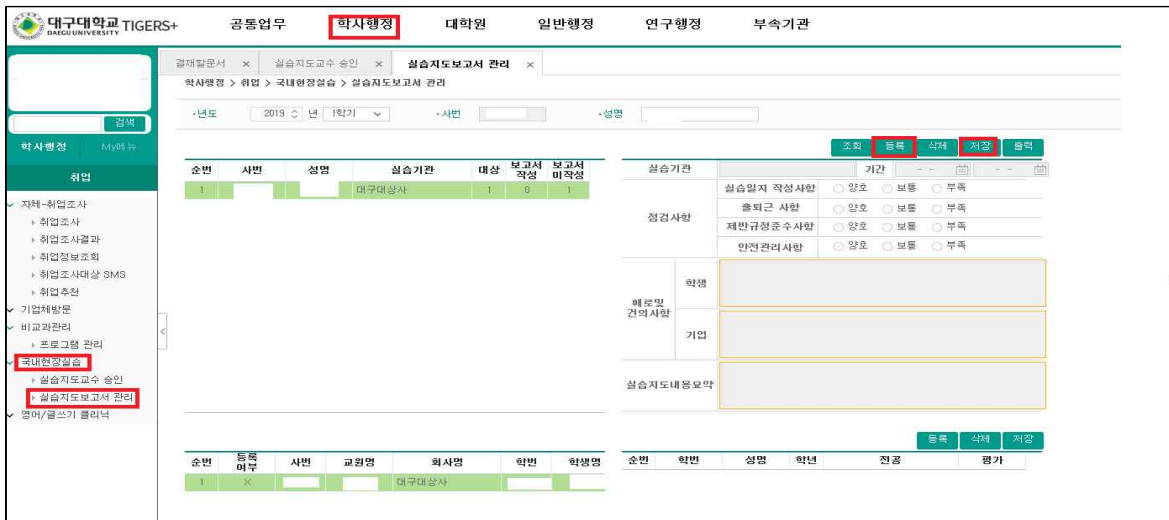
※ 조회 클릭하시면 학생 정보 조회 가능



※ 해당 학생 행을 클릭하면 실습참가신청서 내용 조회 가능

2. 현장실습지도

- 가. 현장실습 기관을 방문, 유선 또는 서면 등을 통하여 실습상황 점검
- 나.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애로사항, 출근 상황, 실습일지 작성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의 실습상황을 평가하여 교원시스템의 '실습지도보고서' 작성(실습지도교수 참여 실적은 교원 봉사업적에 반영)
- 다. 현장실습지도를 위한 실습기관 방문 시 교직원 기업체방문을 신청할 수 있음
 - 1) 메뉴 : TIGERS WEB+(교원시스템) 접속 - 학사 - 취업(or 역량) - 국내현장실습 - 실습지도보고서
 - 2) 지도기간 : 학생 개인별 현장실습 기간
 - 3) 우측의 '실습지도보고서' 및 '학생정보'의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내용입력 및 학생평가 후 각각 저장



4 지원 및 기타사항

1. 평가 및 학점인정

- 가. 평가는 실습생의 출근상황부, 주간활동보고서, 종합보고서, 현장실습기관성적표, 실습지도보고서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평가항목	점수	평가방법
출근상황부	10	결근 1회당 2점 감점
주간활동보고서	15	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
종합보고서	15	작성유무 및 내용 평가
현장실습기관성적표	40	실습기관의 실습생 평가
실습지도보고서	20	실습지도교수의 지도 평가
합계	100	Pass / Fail

- 나. 학점인정은 실습기간 및 신청 교과목에 따라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하며, '일반선택'의 교과구분으로 학점을 부여함

2. 지원사항

- 가. 실습지원비(※예산범위에 따라 변경가능성 있음)
 - 1) 실습학생: 실습학생지원비 월(4주) 40만원 지급
 ※실습학생지원비 지급을 위해 매월(4주)마지막날까지 (실습기관)출석부 및 (실습학생)주간실습일지 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 총 실습기간 중 결석일수가 5일 이상일 시 학점인정 및 실습비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2) 실습기관: 실습기관운영지원비 실습학생 1인당 10만원 지급
- 나. 실습기간 중 학생 실습보험 가입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건표

▶ 학점인정학기: 2020학년도 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16주)		학기제 현장실습 (20주)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2020-03-02(월)	2020-06-21(일)	2020-03-02(월)	2020-07-19(일)
2020-03-03(화)	2020-06-22(월)	2020-03-03(화)	2020-07-20(월)
2020-03-04(수)	2020-06-23(화)	2020-03-04(수)	2020-07-21(화)
2020-03-05(목)	2020-06-24(목)	2020-03-05(목)	2020-07-22(수)
2020-03-06(금)	2020-06-25(금)	2020-03-06(금)	2020-07-23(목)
2020-03-09(월)	2020-06-28(일)	2020-03-09(월)	2020-07-26(일)
2020-03-10(화)	2020-06-29(월)	2020-03-10(화)	2020-07-27(월)
2020-03-11(수)	2020-06-30(화)	2020-03-11(수)	2020-07-28(화)
2020-03-12(목)	2020-07-01(수)	2020-03-12(목)	2020-07-29(수)
2020-03-13(금)	2020-07-02(목)	2020-03-13(금)	2020-07-30(목)
2020-03-16(월)	2020-07-03(금)	2020-03-16(월)	2020-08-02(일)
2020-03-17(화)	2020-07-06(월)	2020-03-17(화)	2020-08-03(월)
2020-03-18(수)	2020-07-07(화)	2020-03-18(수)	2020-08-04(화)
2020-03-19(목)	2020-07-08(수)	2020-03-19(목)	2020-08-05(수)
2020-03-20(금)	2020-07-09(목)	2020-03-20(금)	2020-08-06(목)
2020-03-23(월)	2020-07-12(일)	2020-03-23(월)	2020-08-09(일)
2020-03-24(화)	2020-07-13(월)	2020-03-24(화)	2020-08-10(월)
2020-03-25(수)	2020-07-14(화)	2020-03-25(수)	2020-08-11(화)
2020-03-26(목)	2020-07-15(수)	2020-03-26(목)	2020-08-12(수)
2020-03-27(금)	2020-07-16(목)	2020-03-27(금)	2020-08-13(목)
2020-03-30(월)	2020-07-19(일)	2020-03-30(월)	2020-08-16(일)
2020-03-31(화)	2020-07-20(월)	2020-03-31(화)	2020-08-17(월)

※ 유의사항

- 학기제 국내현장실습기간의 경우 위 조건표상 기재된 기준일로 설정 가능함.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16주 실습만 가능함.
(* 최대 늦은 실습가능기간: 2020. 03. 09.~ 2020. 06. 30)
- 주말 및 법적 공휴일은 실습시작일자로 설정할 수 없음.

[붙임1] 현장실습기관 참여 신청서(실습기관용)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실습기관용)										
실습기관 정보	기관(기업)명				대표자명			직원수		
	업종/소개				사업자등록번호	-		-		
	홈페이지	http://			법인번호			-		
	주소	()								
실습생 모내용	과정	계절제 국내현장실습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현장실습(2) 방학중(4주)	현장실습(3) 방학중(8주)		현장실습(4) 학기중(16주)	현장실습(5) 학기중(20주)				
	실습일자									
	모집인원	남() , 여() , 무관()			남() , 여() , 무관()					
실습장소	(위 주소이외의 장소일 경우)									
실습생 실무	근무부서									
	실습업무				전공분야	반드시 관련전공 () 가급적 관련전공 () 전공무관 () 관련전공 :				
	1일근무시간	:	부터	:	까지(시간)	휴 무	공휴일() , 일요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실습생 지원 사항	실습지원비	실습지원비 여부	O	X	중식제공	O	X	교통편제공	O	X
		지급금액	() 만원		기숙사제공	O	X	기타제공		
	취업연계형	O	X	채용가능 인원수	남() , 여() , 무관()					
*유의 사항	산재보험 가입유무	O	X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범위 적용범위」개정에 의거하여 모든 실습생은 보험적용 대상자임을 유의바랍니다.						
실습생 관리자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휴대폰(필수) :			·회사번호 :		·E-mail(필수) :			
* 위 항목은 실습운영을 위한 필수항목이므로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위와 같이 국내현장실습 참여를 신청합니다.										
기업(기관)명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학과(교수)확인		(인)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										

* 대구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내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실습기관은 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실습기관 실습운영계획서는 매 과정 참여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회원가입 정보는 현장실습지원시스템 사용을 위한 DU마당 홈페이지(http://linc.daegu.ac.kr/duMadang) 회원가입 및 접속을 위해 필요한 로그인 정보이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회원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기가입'으로 표기 바랍니다.

[붙임2]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실습기관) ☞ 참여실습기관 필수제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계획 작성(계절제: 4주, 8주 / 학기제: 16주, 20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16주차	
17주차	
18주차	
19주차	
20주차	

※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수업의 형태를 갖춘 정규 교육과정이므로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매 과정 실습신청 시 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 후 학교로 제출바람.

기업(기관)명 _____ 신청인(대표) _____ (인)

[예시][붙임2] 현장실습 운영계획서(실습기관) ☞ 참여실습기관 필수제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실습기간에 따른 주차별 계획 작성(계절제: 4주, 8주 / 학기제: 16주, 20주)	
1주차	[예시] 오리엔테이션 : 실습기관 소개 및 실습 운영계획 소개
2주차	[예시] 주제별 팀 회의 : 캐릭터 디자인 만들기 실습
3주차	[예시] 실험실습 : 책 표지에 들어갈 삽화작업해보기
4주차	[예시] 실험실습 : 책 표지에 들어갈 삽화작업해보기
5주차	[예시] 실험실습 : 책 본문에 들어갈 디자인작업
6주차	[예시] 실험실습 : 책 본문에 들어갈 디자인작업
7주차	[예시] 실험실습 : 책 본문에 들어갈 디자인작업
8주차	[예시] 실험실습 : 전체적인 책 디자인 확인작업
9주차	[예시] 실험실습 : 전체적인 책 디자인 확인작업
10주차	[예시] 실험실습 : 전체적인 책 디자인 확인작업
11주차	[예시] 실험실습 : 전체적인 책 디자인 확인작업
12주차	[예시] 실험실습 : 최종완성본 확인 및 검토
13주차	[예시] 실험실습 : 최종완성본 확인 및 검토
14주차	[예시] 실험실습 : 최종완성본 확인 및 검토
15주차	[예시] 실험실습 : 최종완성본 확인 및 검토
16주차	[예시] 주제별 팀 회의 : 최종완성본 결과물 발표
17주차	[예시] 주제별 팀 회의 : 최종완성본 결과물 발표
18주차	[예시] 실습결과보고
19주차	[예시] 실습결과보고
20주차	[예시] 실습결과보고

※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수업의 형태를 갖춘 정규 교육과정이므로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은 매 과정 실습신청 시 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 후 학교로 제출바람.

기업(기관)명 _____ 신청인(대표) _____ (인)

[붙임3]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학기제 전공선택 신청 학생용)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

소 속	대학	학과(전공)	학년(학기)
성 명		학 번	
실습기관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6주() 20주()
학점인정학기	학년도	학기	인정교과목 국내현장실습(일반선택) 3학점 전공현장실습(전공선택) ()학점

실습내용	인정사유(의견)

위와 같이 국내현장실습에 대한 전공학점인정 심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부(과) 전공주임교수 : (인)

소속교수(*실습지도교수 날인 필수)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성명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 소속교원(정년트랙 전임교원) 2/3 이상이 날인하여 제출하여야만 학점 인정

※ 현장실습내용 증빙서류(기관운영계획서) 필수 첨부

※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 학과의 전공으로만 인정됨.

(복수전공,부전공 인정불가)

대구대학교 총장 귀하